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범죄수사청장,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추가 〉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67호)

2026.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 추가(안 제2조)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9. 14.
3. 회 부 일 : 2026. 9.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Ⅲ. 검토의견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추가(안 제2조)

□ 개정안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2026년 10월 2일 출범 예정인바,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조(신고의무자) ----- ----- ----- ----- ----- ----- -----

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총경</u> (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9. <u>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 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u> -----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지방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을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신고에 따라 공개되는 병역사항으로는 군필자의 경우 군별, 계급, 입영/전역연월일, 전역사유, 복무부대, 병과 등이고 면제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병역사항임.

그런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서 현행법 상의 신고의무자가 아님.¹⁾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

□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구분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체계로 구성되고 경찰공무원과 같은 수사를 담당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에 상응하여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신고의무자로 경찰청장, 소방청장을 명시하지 않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만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경찰청장, 소방청장의 경우 각각의 계급 체계에서 최고 계급²⁾으로 보하는데 비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체계 밖에 위치함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해석 상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2)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청장)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문 의 처
02)6788-5307